

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2. 1. 25.>

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지원 대상	지원 구분	기준금액(만원)
1. 중증 후유장애 인	가. 재활보조금 지급	월 20
	나. 장학금 지급	분기 30
2. 유자녀	가.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	월 25
	나. 장학금 지급	분기 30
	다. 자립지원금 지급	월 6
3. 피부양가족	보조금 지급	월 20

비고: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,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